행정처벌에 대한 리해

리명일

국가기관과 일군들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일군들과 공민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위법행위와의 투쟁을 강하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행정처벌은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을 어긴 대상에 대하여 그 엄중성에 따라 행정법적책임을 지우는 국가의 법적제재의 한 형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민은 누구나 다 법을 지켜야 하며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적제재를 받아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21폐지)

행정처벌은 그것이 그 어떤 호소나 권고, 해설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법 적책임추궁이다.

일반적으로 법적제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벌, 형벌 그리고 민사책임 등으로 구분하여볼수 있다. 행정처벌은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 즉 행정법규범을 위반한 대상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제재이다.

행정처벌의 대상으로는 반드시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을 어긴 행정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행정담당자나 행정상대방만이 될수 있다. 행정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행정위법행위를 구성할수 없다. 행정법률관계는 행정담당자로서의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일군들을 일방으로 하고 행정상대방으로서의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별적공민들을 타방으로 하는 행정법적권리의무관계인것만큼 행정위법행위자역시 이러한 법률관계속에서 권리와 의무의 위반자들이 될수 있다.

행정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행정담당자는 국가행정권력을 행사할수 있는 행정직무 상권리와 의무를 지닌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 일군으로서 행정법률관계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지만 비법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직무상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행 정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이때의 행정담당자는 행정위법행위자로 된다.

행정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의 행정상대방은 행정담당자로서의 국가기관과 그 일군들의 적법적인 결정, 지시에 복종할 의무와 함께 그의 그릇된 직권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받을수 있는 권리를 지닌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별적공민으로서 국가적의사가 반영된 정당한 행정법적결정, 지시에 복종하지 않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행정법적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행정위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이때의 행정상대방은 역시 행정위법행위자로 된다.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국가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위법행위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며 일군들과 공민들을 제때에 각성시켜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행정처벌은 우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정연한 제도 와 질서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선군시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민군대의 혁명적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을 따라배

워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여야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행정법은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실현의 가장 중요한 법 적수단으로서 국가의 통일적지도에 기초한 결정, 지시의 집행관계를 규제하고 보호한다. 바 로 이러한 행정법률관계를 침해하는 행위가 곧 행정위법행위로 된다.

행정위법행위는 행정법규범을 위반하고 행정법이 보호하는 행정관계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 국가와 사회, 공민에게 일정한 인신적, 재산적손해를 끼치고 국가적인행정관리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다.

행정처벌은 일군들과 공민들이 행정위법행위의 엄중성과 그로부터 초래되는 법적책임에 대하여 제때에 똑바로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확립된 법규범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집행해나가도록 한다.

행정처벌은 또한 위법행위와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위반행위는 다같이 낡은 사상잔재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낡은 사상잔재는 그 집요성과 보수성으로 하여 한두번의 교양만으로는 완전히 없앨수 없다.

행정처벌은 아직 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처벌로서 위법자들을 제때에 각성시켜 위법행위가 반복되거나 더 큰 범죄로 자라지 않도록 자극한다. 위법자들은 행정처벌을 통하여 위법행위의 사회적위험성과 그로부터 국가앞에 지게 되는 법적책임에 대하여 제때에 깨닫게 되며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각오를 가지게 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공민들과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언제나 존엄있게, 무겁게 대하도록 하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확립된 법질서를 철저히 지켜나가게 함으로써 위법행위와 범죄의 미연방지에 기여한다. 한편 위법자들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벌적용은 범죄적 및 위법적요소를 가지고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을 어기지 말아야겠다는 인식을 강하게 줌으로써 범죄와 위법현상을 발로시키지 않도록 각성시키고 그러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게 한다.

행정처벌은 또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일군들은 우리 당과 국가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일군들의 준비정도와 책임성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비롯한 국가행정경제사업은 실지로 매개 단위, 매개 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상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 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행정처벌은 공민들속에서 발로될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일정한 직무와 직급에서 일하는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직권람용, 월권행위, 직무태만과 같은 직무상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기도 하다. 행정처벌종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고, 엄중경고, 강직, 해임, 철직, 강급, 자격정지, 자격박탈, 무보수로동 등은 다름아닌 일정한 직무와 직급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으로 인하여 발생시킬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법적제재로서 일군들을 제때에 자극시키고 각성시킨다. 이로부터 행정처벌의 옳바른 적용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며 그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다른 법적제재형태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행정처벌의 특징은 우선 아직 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라 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법규범과 규정을 어기고 일을 되는대로 하고 국가사회재산을 탐오 랑비하며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법위반현상들은 그 목적과 동기, 침해한 사회관계, 사회적위험성정도 등에 따라 범죄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구분된다.

물론 정치성, 적대성을 띠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살인, 강간, 강도를 비롯한 강력범죄들은 론할 여지없이 형벌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로 인한 위법행위는 범죄행위와는 달리 행정처벌의 대상으로 된다.

범죄행위는 어디까지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사회적위험성이 큰 법위반행위이다. 이와 달리 위법행위는 그 사회적위험성정도가 형벌을 줄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 가벼운 법위반행위이며 그것은 행정처벌을 줄 정도의 법위반행위이다.

사회주의사회에 있게 되는 위법행위는 그것이 아직 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좀먹고 국가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여기고있는 사회주의국가는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융화묵과할수 없으며 해당한 행정처벌을 가하게 된다.

행정처벌의 특징은 또한 재판절차가 없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적제재라는데 있다.

형사법적책임이나 민사법적책임은 그것이 반드시 재판소의 판결 혹은 중재기관의 재결에 의하여 심리확정된다.

그러나 행정처벌은 해당 처벌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들이 적용할수 있다. 행정처벌에서 자격박탈과 강급, 자격정지처벌은 해당 자격과 급수를 수여한 기관에서 심의결정하며 벌금처벌은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단속통제기관에서 제정된 절차에 따라 직접 적용할수 있다.

이와 함께 변상처벌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에게 적용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준 자기 단위의 종업원에게 변상처벌을 줄수 있다. 이러한 행정처벌 제도는 행정처벌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위법행위가 일반적으로 범죄에 비하여 그 엄중성과 사회적위험성이 적고 위법사실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백한것과 관련된다.

권한있는 국가기관들에 의한 행정처벌의 적용은 위법행위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제때에 정확히 가할수 있게 하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국가기관의 사업권위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행정처벌의 특징은 또한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을 위반한 개별적공민뿐아니라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에도 적용되는 법적제재라는데 있다.

행정처벌의 적용대상은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을 위반한 개별적공민은 물론 기관, 기업소, 단체도 될수 있다. 행정법은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지도기 능실현의 중요한 무기로서 여기에는 국가에 의한 사회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 체의 조직과 운영질서, 임무와 권한 등 행정법률관계가 폭넓게 규제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행정법규범에 기초하여 자기 활동을 진행하며 그에 대하여 국가앞에 책임 지게 된다.

이로부터 개별적공민뿐아니라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도 행정법적요구를 위반하 거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법적책임추궁이 진행되게 된다.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에 적용되는 행정처벌에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어기고 공해를 조성하는 공장, 기업소에 대한 동력공급과 물자공급, 은행거래의 차단 등과 같은 방법으로 그것이 시정될 때까지 적용되는 중지처벌이나 비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위법행위에 리용된 재산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해당 재산을 국고에 넣는 몰수처벌이 있다.

행정처벌의 특징은 또한 그 처벌종류가 여러가지라는데 있다.

행정법적제재형태로서의 행정처벌은 국가의 다른 법적제재형태인 형사법적제재나 민사법적책임형태에 비하여 그 종류가 여러가지이다. 행정처벌에는 일군들의 직무상위법행위에 적용되는 경고, 엄중경고, 강직, 해임, 철직, 무보수로동처벌, 일정한 자격 또는 급수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처벌, 물질적자극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벌금, 변상, 몰수처벌, 비법적인 경영, 건설, 영업에 적용되는 중지처벌, 로동단련형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로동교양처벌 등 여러가지가 있다.

행정처벌종류가 여러가지로 존재하게 되는것은 국가사회생활의 각이한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수 있는 위법행위들에 대하여 그에 해당한 가장 적중한 행정처벌을 제때에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일정한 행정처벌을 적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들은 위법행위에 해당한 적중한 행정처벌을 제때에 정확히 적용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즉시에 제지시키고 위법자들을 제때에 각성시킨다.

행정처벌은 국가의 행정조치와도 구별된다.

국가의 행정조치는 국가적 및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의무를 무조건 리행하게 하는 국가기관과 일군들의 활동이다. 국가는 국가와 사회, 집단의 리익을 보호 하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행정조치에는 인신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산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다.

인신에 대한 행정조치는 주로 세관, 의료, 위생 등의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위험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이다. 여기에는 강제격리, 강제치료, 위생통행금지 등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재산에 대한 행정조치는 주로 재산과 관련한 의무를 무조건적으로리행하게 하는 조치이다.

물론 행정처벌이나 행정강제가 다같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띤다. 그러나 행정처벌은 이미 수행된 위법행위에 대한 권한있는 국가기관의 행정법적제재이라면 행정조치는 위법행위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제지하며 있을수 있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권한있는 국가의 행정활동이다. 따라서 행정조치는 행정법적제재가 아니므로 해당 국가적요구가 리행되면 그것으로 해제된다.

모든 일군들과 공민들은 행정처벌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